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11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7누3452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9. 3. 선고 2015구합509 판결
환송전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8. 12. 선고 2015누59305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두51535 판결
변 론 종 결	2017. 5. 17.
판 결 선 고	2017. 5. 3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10. 10. 부동산 취득분 취득세 483,779,630원, 지방교육세 61,929,780원, 농어촌특별세 12,638,820원 등 지방세 합계 558,348,2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1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2면 7행부터 3면 9행까지) 중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2면 8행 이하의 "분할전 회사"를 "B"로 고친다.

○ 2면 11행부터 1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나. 원고는 B의 '모든 투자자산'과 '서울 소재 모든 재산'의 사업부문을 분할대상으로 한 분할계획에 따라 2011. 9. 30. B로부터 서울 종로구 D 대 756㎡, 서울 종로구 E 대 19.8㎡, 서울 종로구 F 대 56.2㎡, 위 각 토지의 지상 건물, 서울 종로구 G 대 264.5㎡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장기금융상품, H 주식회사, 주식회사 J 등이 발행한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등의 자산을 양도받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적격분할로 승인되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 2면 1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2면 20행, 3면 6행의 각 "라"를 순차로 "마", "바"로 고친다.

【 라. 이 사건 부동산의 장부가액은 약 15억 원, 이 사건 부동산 처분 당시 이 사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11

주식의 가액은 약 200억 원 상당이었다. 이 사건 주식은 H 주식회사 등 원고의 100% 지분권자인 K가 지배하는 계열사들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B가 오랜 기간 보유하여 왔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B로부터 승계받은 후 그 중 일부를 처분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 보유하면서 다른 계열사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기도 하였다. 】

○ 3면 9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7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① 조특법 제120조 제1항 제6호 및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46조의3 제3항 제1호는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 한하여 분할하기 전의 회사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에 대하여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2조의4 제7항, 제80조의4 제8항은 일정 기간 내에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을 이 사건처럼 원고가 기존 부동산임대업을 계속하고자 처분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모법의 위임입법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이 경우에는 취득세 추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11

② 원고가 B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에는 약 15억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은 물론 약 200억 원 상당의 이 사건 주식도 포함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감면 취득세에 대한 추징 요건의 성립 여부

(가)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및 승계받은 사업의 범위

① 조특법 제120조 제1항 제6호는 적격분할에 대한 과세특례로서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되, 그 단서에서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3항 제1호는 추징사유의 하나로 '분할신설법인이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7항은 적격합병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8항을 준용하여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는 적격분할의 요건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기업 전체적으로 회사분할이라는 조직변경에 불구하고 그 사업이 계속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폐지 역시 위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따라 개별 사업부문이나 개별 사업장이 아닌 승계받은 사업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②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위 법리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11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B로부터 부동산임대업뿐만 아니라 유가증권투자업도 분할하여 승계하였으므로 승계받은 사업 전체에는 위 두 사업부문이 포함되고, 이때 유가증권투자업은 실질적으로는 계열사 지배목적 주식을 보유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i) 분할계획서 등에서 '모든 투자자산' 부문을 '서울 소재 부동산' 부문과 함께 분리하여 이전한다고 명시하였고, 원고의 목적사업을 '부동산 매매 · 임대업'과 '유가증권투자업'으로 표시한 것도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일치한다.

ii) B가 그 목적사업에 '유가증권투자업'을 등기한 바는 없으나 H 주식회사, 주식회사 J의 주식 등은 원고의 100% 주주인 K가 계열사 지배를 위하여 장기 보유한 주식인 점, 분할로 이전된 '모든 투자자산' 중 장기금융상품 가액 약 74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된 장부가액 약 200억 원의 계열사 주식들로서 분할 이후에는 원고가 계열사 지배 역할을 담당한 점 등에 비추어 B는 실제로 이 사건 주식을 계열사 지배 목적으로 보유하여 '계열사 지배목적 주식 보유' 사업부문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다.

iii) B는 이 사건 주식의 이전으로서 계열사 지배목적 주식 보유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원고에게 승계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iv) 원고와 B는 당초 분리되는 사업부문에 관련된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한 것으로 하여 적격분할 승인을 받았는데, 계열사 지배목적 사업부문을 분할 이전한 것이 아니라면 부동산임대업 사업부문만을 분할하면서 그 사업부문에 관련된 자산 및 부채가 아닌 거액의 매도가능증권까지 이전시킬 수 없고, 매도가능증권과 관련된 별도의 다른 사업부문도 함께 분할되어야 그 이전이 가능하다.

③ 따라서 원고가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여 승계받은 사업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11

폐지하였는지 여부는 승계받은 사업 전체인 부동산임대업과 계열사 지배목적 주식 보유 사업부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고가 승계한 고정자산을 그 가액의 2분의 1 이상 처분하였는지 여부

①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과 그와 관련한 자산 · 부채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적격분할의 요건을 갖추어 승계받은 경우에는, 조특법 제120조 제1항 제6호,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3항 제1호, 같은 조 제6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7항의 내용과 입법 취지, 그리고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은 기업지배라는 사업의 성격상 그 발행기업의 운영 및 통제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므로 매각에 의한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보유하는 일반적인 투자주식과는 그 목적과 기능에 있어서 구별되는 점, 지배목적 보유 주식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의 경우에 유형자산 외에 당초 승계받은 주식의 대부분을 매각한 때에도 그 사업의 계속성과 연속성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사후관리를 위하여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지배목적 보유 주식의 가액을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에 포함시켜 판정하여야 한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B로부터 승계한 이 사건 주식은 원고의 100% 주주인 K가 지배하는 계열사들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B는 계열사 지배목적에 따라 오랜 기간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여 왔고, 이 사건 주식은 K의 주식과 합산하여 H 주식회사 등의 최대지분이 되며, 보유기간도 3년이 넘는 점 등 을 고려하면, 원고가 승계받은 이 사건 주식은 계열사 지배목적 보유 주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③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승계받은 사업 전체의 고정자산가액에는 이 사건 부동산은 물론 이 사건 주식의 가액도 포함된다. 원고가 이 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11

건 부동산을 매각하였더라도 그 가액이 약 15억 원으로서 승계받은 고정자산가액 즉, 이 사건 부동산과 주식 가액을 합한 약 215억 원의 2분의 1에 미치지 못함이 분명한 이상 원고가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가 B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였다는 전제에서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다른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원고가 B로부터 승계받은 것이 계열사 지배목적 사업부문에 대하여는 적격분할의 요건, 즉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 및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당초부터 취득세 감면 사유가 없으므로 그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관계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B로부터 계열사 지배목적 주식 보유 사업부문에 대하여 적격분할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것이므로 나머지 점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분할 당시에는 지배목적 주식 보유 사업부문의 적격 분할 가능성에 대하여 법령상 제약이 없었으므로, 법인이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는 경우도 적격분할에 해당되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11

② 2014년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2014. 3. 24. 대통령령 제25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82조의2 제2항, 제3항에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판정기준을 규정하여 종전보다 적격분할의 기준을 강화하였다. 위 규정에 의하면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 · 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은 이를 단순히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볼 수 없게 되었으나, 예외적으로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 · 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으로 특정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볼 수 있다. 이때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2014. 3. 14. 기획재정부령 제409호로 개정된 것) 제41조 제3항에 따라 분할법인이 3년 이상 해당 법인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한 최대주주(특수관계자들이 보유한 주식 포함)에 해당하면 된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B로부터 승계한 이 사건 주식은 모두 원고의 100% 주주인 K가 지배하는 계열사들이 발행한 주식이고, 원고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들은 K의 주식과 합산하여 H 주식회사 등의 최대지분이 되는 점, 보유기간도 3년이 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은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계열사 지배목적 보유 주식에 해당한다. 나아가 지배목적 보유 주식 사업부문은 그 모든 주식을 넘겨야 하는데, B는 보유하던 모든 계열사 주식을 원고에게 이전한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 법인세법령의 기준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하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원고는 이 사건 분할 승계 당시 과세당국으로부터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승인받아 모든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고,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11

자산조정계정에 계상하였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승계받은 후 일부를 처분하였으나, 여전히 대부분을 보유하여 왔고 지분을 추가로 획득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지배구조 관리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나아가 기업은 지배목적으로 보유한 주식이라도 경영판단에 의해 이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지배목적 주식 보유를 부정할 근거는 되지 않는다).

⑥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이 '지배목적 보유 주식(제1호)'과 병렬적 요건으로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더라도(제2호), 지배목적 보유 주식의 경우에도 지주회사와 같은 수준으로 주식을 소유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위 규정의 위임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지배목적 보유 주식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요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재판장 판사 김용빈

판사 박재우

판사 정승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11

관계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제9호 및 제17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 호(물적분할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다만,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3항(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 제2항 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분할대가의 계산, 승계받은 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11

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3(적격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분할신설법인등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제2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세액공제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익금산입액 및 손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80조의4(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③ 법 제44조의3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을 말한다.

⑧ 합병법인이 제3항에 따른 기간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11

폐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고정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82조의4(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③ 법 제46조의3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을 말한다

⑦ 법 제46조의3 제3항 제1호에 따른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 여부 판정 등에 관하여는 제80조의4 제8항을 준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된 것)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②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85조제1호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은 제외한다)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
3.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③ 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

1.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11

는 사업부문.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규칙(2014. 3. 14. 기획재정부령 제409호로 개정된 것)

제41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③ 영 제82조의2제3항제1호에서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분할법인이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끝.